

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제 정 2012. 03. 02.

개 정 2012. 09.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정관 제14조 8항에 따라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원장선임을 위한 원장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원장후보자 추천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원장추천 절차) 법인의 원장 후보자 추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원장의 임기만료일 2개월 전에 원추위 구성을 의뢰하여 2인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
2.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원장 궐위 시에는 궐위 후 10일 이내에 원추위 구성을 의뢰하여 2인 이내의 원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추위 구성을 의뢰할 경우 이사장은 필요시 원장 선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 시달할 수 있다.

제 2 장 원장추천위원회

제 4조(구성) 원추위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3.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1인
4. 대학교총장이 추천하는 2인
5.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6. 전라북도 담당과장
7. 군산시 담당과장

제5조(구성시기) ① 이사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원장의 임기 만료 2개월 이전까지 법인사무국에 원추위를 구성하도록 한다. 다만, 원장 결위 시에는 결위 후 10일 이내에 법인사무국에 원추위를 구성하도록 한다.

② 법인사무국에서는 전항에 따라 이사장이 원추위 구성을 의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추위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법인사무국에서 원추위를 구성하여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이사장이 10일 이내에 원추위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첫회의 및 위원장 선출) ① 원추위의 첫 회의는 법인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원추위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원추위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원추위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회의록) ① 원추위의 회의록 작성 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1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원추위의 회의록은 원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등) ① 원추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원추위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추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11조(비공개 회의) ① 원추위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비공개회의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며, 회의결과의 기록·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원추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기간) 원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성된 날로부터 이사회에서 원장이 선임될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 3 장 원장후보자 추천

제14조(원장후보자의 자격) 원장후보자는 법인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능력을 갖춘 자 중에 선출한다.

1. 산학협력에 대한 합리적 이해와 경험을 갖춘자
2. 공정한 인사운영과 합리적 경영으로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
3. 산업기술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산학융합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

제15조(원장후보자의 공모) 원장후보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원장후보자의 추천) ① 원추위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출된 원장후보자를 지체 없이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원추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장 임기만료 3주일 전에 원장후보자 2인 이내를 선출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 궐위 시에는 궐위 후 5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추위에서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때에는 위원장 및 2인 이상의 위원이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추천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시행세칙) 원추위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2012. 03.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의 원장 선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2012. 09.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